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2016년 영인면 종합감사결과

목 차

- I. 감사 실시 개요 / 2
- II. 감사 결과 / 3
- III. 감사 결과 처분 지시 / 4
- IV. 특수시책 / 42
- V. 수범사례 / 43



아산시 감사담당관

I. 감사실시 개요

□ 감사 개요

- 대상 기관 : 영인면
- 감사 기간 : 2016. 6. 7. - 6. 9.(3일간)
- 감사 범위 : 2013. 3. 1. - 감사일 현재
- 감사 인원 : 열린감사팀장 등 6인(1반)

□ 감사 중점 사항

- 주요시책 및 지시사항
-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
- 각종 공사관련 부실공사 및 부조리 예방
- 복지업무 추진실태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태
-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 및 창의적 업무능력 제고
- 개선 건의사항 및 수범사례

II. 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단위 : 건)

계	지 적 사 항				특수 시책	수범 사례	건의 사항	민원 사항
	시 정	주 의	개 선	현 지				
20	7	11	-	2	1	2	-	-

□ 재정상 조치

(단위 : 원)

구 분	계	추 징	회 수	감 액	비 고
계	2,827,990	225,000	2,602,990		
본 처 분	2,827,990	225,000	2,602,990		
현지처분	-	-	-	-	

□ 신분상 조치

(단위 : 명)

계	중 징 계	경 징 계	경고·훈계	주의	비 고
2	-	-	-	2	

Ⅲ. 감사결과 처분지시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원)

연번	확인서 및 지적사항	행정 조치	재정 조치	비고
계	18건	시정 7 주의 11	2,827,990 225,000 2,602,990	계 추징 회수
1	○ 법인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	주의		
2	○ 주민자치위원회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주의		
3	○ 용역계약 체결 관련	시정	225,000	추징
4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시정	2,602,990	회수
5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부적정	시정		
6	○ 보훈 명예수당 예금계좌 변경 부적정	주의		
7	○ 효도수당 신청 행정절차 미이행	시정		
8	○ 예산집행실명제 미이행에 관한 사항	주의		
9	○ 건설공사 준공검사 처리 부적정	주의		
10	○ 수의계약 내역 공개 소홀	주의		
11	○ 건축물대장 말소 관련	시정		
12	○ 건설공사 하자검사 관련업무 소홀	주의		
13	○ 산감기동대원 채용업무 소홀	주의		
14	○ 국토공원화 인부사역업무 소홀	주의		
15	○ 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업무 관련	주의		
16	○ 수방자재공구 관리 소홀	주의		
17	○ 민방위 자재관리 소홀	주의		
18	○ 농지취득자격증명 업무처리 소홀	주의		

2. 현지처분사항 일람표

(단위:원)

연번	제 목	조치사항	행정 조치	재정 조치	비고
계	2건		시정 1 주의 1		
1	민방위 업무 소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다시 구성하시기 바람	시정	-	
2	보안점검부 작성 및 관리 소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주의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법인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영인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법인신용카드 사용 현황 : 붙임 참조

나.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의하면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영인면에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직원인사 이동에 따른 회식, 일반운영비로 행정차 유류구입 등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 후 사용자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사용자를 알 수 없게 처리하였습니다.

【처분요구】

영인면장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사용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신용카드 사용 현황

연번	사 용 현 황			신용카드 사용자 기재	사 용 내 역
	일 시	금 액(원)	사용처		
1	2015-04-03	269,000	○○생고기	없음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급
2	2015-04-27	66,450	◎◎주유소	없음	행정차 유류 구입
3	2015-05-11	149,500	◇◇마트	없음	민원접대용 차류 구입
4	2015-05-18	27,000	□□솔루텍 주식회사	없음	주민자치회관 에어컨 수리
5	2015-07-01	68,950	△△주유소	없음	행정차 유류 구입
6	2015-07-31	44,900	▽▽문구오에이	없음	사무용품 구입
7	2015-08-28	44,000	○○별쇠	없음	면사무소 산업창고 현관 정 교체
8	2015-09-07	33,000	◎◎기획	없음	민원업무용 고무인 제작
9	2015-09-23	420,000	㈜◇◇트 아산점	없음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	2015-10-01	15,000	□□코리아㈜	없음	주민자치회관 샤워실 보 일러 수리
11	2015-11-23	165,000	△△유통	없음	면사무소 화장실 하수구 트랩 수리
12	2015-12-01	11,000	▽▽모터스	없음	행정차 타이어 수리
13	2015-12-08	160,000	○○정육	없음	민방위대 창설 기념 행사 참석자 급식비
14	2015-12-16	50,000	◎◎주유소	없음	행정차 유류 구입
15	2015-12-24	60,000	◇◇회원	없음	환경정비용 화분 구입
16	2016-01-05	30,000	□□아크릴	없음	면사무소 현관 유리창 썬 팅
17	2016-01-20	46,360	△△주유소	없음	행정차 유류 구입
18	2016-03-07	40,000	㈜▽▽문디자인	없음	산불예방 캠페인 현수막 제작
19	2016-03-17	61,600	○○유통	없음	면사무소 화장실 방향제
20	2016-05-12	120,000	◎◎유통	없음	직원회의용 차류 구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주민자치위원회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영인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주민자치위원회 지출 현황

(단위:건,천원)

구 분	지출현황		지급방법		채주		증빙자료		비고
	건수	금액	계좌이체	현금지급	기재	미기재	첨부	미첨부	
계	59	29,038	11	48	13	46	2	57	
2014년	44	20,465		44		44		44	
2015년	15	8,573	11	4	13	2	2	13	

나. 위법·부당내용

-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경비의 집행)에 의하면 회계책임자는 지출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같은 시행규칙 제16조(회계책임자 지정 등) 제4항에 의하면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회계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영인면 자치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44건 20,465,580원 2015년도 15건 8,573,000원을 집행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채주도 정확하지 않고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없이 지출하였음에도 영인면에서는 회계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처분요구】

영인면장은

-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자치위원회 지도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용역계약 체결 관련

【부 서 명】 영인면

【행 정 상】 시 정(추 징)

【재 정 상】 255,000원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원)

건 명	연 도	계 약 체결일	계약기간	계약금액	지 급 처	집행품의 (내부결재)	채 권 미소화
계				11,466,000			255,000
주민자치회 관 정수기 임대	2015년	2015.02.24	15.03.01 20.02.28	4,728,000	○○○ 주식회사	2015.02.25	105,000
면사무소 정수기 및 비데 임대	2016년	2016.03.03	16.03.01 21.02.28	6,738,000	◎◎◎ 주식회사	2016.03.04	150,000

나. 위법·부당내용

- 『지방재정법』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 기본원칙중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수 없다라고 되어있으며,

또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제1항에 의하면 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신청하는자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자, 용역

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자 등으로 기준을 정하고 지역개발 채권의 구체적인 매입 대상과 기준을 별표1에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제4항에 1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도급,용역 계약에는 대금 청구금액의100분의 2.5,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는 대금 청구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산출결과 5천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천원 단위로 계산하도록 하였으며, 조례개정(제3772호 2013.07.30)을 통하여 2013. 8.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대금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자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자는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에 의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만 해당한다 하였습니다.

- 그러함에도 영인면에서는 위와같이 정수기 및 비데 임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고, 단일회계연도 집행을 위하여 단년간 예산편성 및 계약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5년간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기본원칙에 반하여 부정적하게 운영하였으며, 2건의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255,000원을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영인면장은

-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미소화한 채권 255,000원을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쌀소득증보전직불금 지급 관련

【부 서 명】 영인면

【행 정 상】 시 정(회 수)

【재 정 상】 2,602,990원

【지적내용】

가. 쌀직불금(변동) 지급현황

(단위:㎡,원)

지 급 년 도	신청인	농지지번	토지이용실태 현황				쌀직불금(변동) 지급현황		
			계	답	기타	사유	지급액	적 격	부적격
계	11명	9필지	27,148	3,430	23,718		2,975,060	372,070	2,602,990
2014년~ 2015년	김○○	백석포 161	1,914	0	1,914	전	242,270	0	242,270
2014년~ 2015년	이○○	성내리 210-3	3,515	1,500	2,015	초지	243,520	189,870	53,650
2014년~ 2015년	황○○ 외1	성내리 333	3,966	1,020	2,946	유지	423,590	129,110	294,480
2014년~ 2015년	김○○ 외1	성내리 466	6,557	0	6,557	유지	830,000	0	830,000
2014년~ 2015년	장○○	신화리 322-1	2,955	0	2,955	전	319,110	0	319,110
2014년~ 2015년	성○○	신화리 400	2,344	0	2,344	전	296,710	0	296,710
2014년~ 2015년	이○○	창용리 165-2	1,855	910	945	잡종지	108,220	53,090	55,130
2014년~ 2015년	장○○	창용리 234	1,916	0	1,916	전	242,530	0	242,530
2014년~ 2015년	장○○	창용리 235	2,126	0	2,126	전	269,110	0	269,110

나. 위법·부당내용

- 『쌀소득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시행지침서』 및 『쌀소득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쌀소득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지급대

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에 이용된 농지’ 이어야 하며 고정직접지불금은 같은 법률 제9조(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의4(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에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고 현재는 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 고 하였고, 변동직접지불금은 같은 법률 제11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에 ‘고정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하는 농지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 그러함에도 영인면에서는 2014년부터 2015년 쌀직불금 신청대상자중 위 직불금 지급현황의 김○○외 10명이 신청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이용실태 현황을 파악하여 쌀을 직접 재배하지 않고 전 또는 유지 등으로 이용하는 농지와 농지의 형상 또는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잡종지 또는 유지 등으로 이용하는 농지는 변동지불금을 지급하지 아니어야 함에도 적격농지로 선정하여 2,602,99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영인면장은

- 「쌀소득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불금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부당 지급된 직불금 2,602,99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부적정

【부 서 명】 영인면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부적정 발급현황

연번	장애인	발 급 일	장애유형	부당내역	적정처리
1	김○○	2013.4.17.	지체(상지관절) 4급	주차가능	주차불가
2	김○○	2013.12.6.	지체(하지관절) 4급	본인주차가능	보호자 주차가능
3	김○○	2014.6.25.	지체(하지관절) 5급	본인주차가능	보호자 주차가능
4	이○○	2015.12.21.	청각(청력) 2급	보호자주차가능	본인주차가능

나. 위법·부당내용

○ 등록장애인은 자동차 표지발급에 있어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의 「제4장(장애인 편의증진)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지침」 및 「장애 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0호)」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 자동차 명의 기준에 따른 구분에 의하면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 「본인용」 표지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미성년자 또

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를 발급한다.

○ 그런데 영인면에서는 위의 현황과 같이 김○○의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해당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여 ‘주차불가 표지’로 발급해야 함에도 ‘주차가능 표지’로 부당하게 발급하였으며, 김○○ 외 1인은 보호자 명의의 차량임에도 장애인 「본인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하였고, 이○○은 장애인본인의 운전면허증이 있음에도 「보호자 주차가능」 표지를 부당하게 발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영인면장은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부적정 발급된 표지를 적정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보훈 명예수당 예금계좌 변경 부적정

【부 서 명】 영인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보훈대상자 현황

- 대 상 자 : 김○○ (1950.3.3.)
- 주 소 : 영인면 상성길 14번길 ◇◇, □□□호 ◎◎빌라
- 지급계좌 변경일 : 2016.3.10.

나. 위법·부당내용

-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지급방법 등)에 의하면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전 달 마지막 날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사항 중 수당지급 예금계좌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후 매월 10일 이내에 제3조의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을 말한다)에 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그러함에도 영인면에서는 위와 같이 김○○(영인면 상성길)의 예금계좌를 변경하면서 본인 계좌지급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였으며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유선상 요청을 이유로 임의 변경 처리하는 등 대상자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영인면장은

-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명예수당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효도수당 신청 행정절차 미이행

【부 서 명】 영인면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효도수당 신청자 현지사실조사 미이행

연번	신청일자	성 명	조사 이행여부	비고
1	2014. 7. 11	전○○	부	
2	2015. 2. 26	김○○	"	
3	2016. 2. 22	김○○	"	

나. 위법·부당내용

-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아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하며, 동 조례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1항에 따르면 효도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은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그러함에도 영인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전○○ 외 2명의 효도수당 신청 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또는 이장확인을 받지 않아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영인면장은

-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도수당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예산집행실명제 미이행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영인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e-호조 등록 현황

연 도	비실명 처리건수	총 지출건수	기본경비+인력운영비	비고
합 계	1,450	2,979	1,529	
2013	400	872	472	
2014	476	905	429	
2015	414	857	443	
2016	160	345	185	6.9.기준

나.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의하면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하여 반드시 정당한 승인권자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후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공무원의 회계책임 강화를 위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 회계 관계공무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 집행품의, 원인행위, 지출 및 지급결의 등 집행행위자의 실명이 기재 되는『예산집행 실명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회계부서는 집행내역을 상호 확인하여야 하며,『예산집행 실명관리카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공개해야 한다.

회계책임을 지는 공무원은『지방재정법』제91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중 재무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등과『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회계사무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예산집행 품의자를 포함)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회계과-12288(2013.5.7.)호 문서를 시행하여 회계담당자의 단독처리 예방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9.8.17.부터 예산집행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는 품의에서 지급명령까지 각 단계별로 담당자의 등록절차 후 상급자의 승인절차를 거쳐야하고 시스템 사용자의 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음을 안내하며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붙임 예산집행 업무처리 흐름도 참조)

- 그러함에도 영인면에서는 지방재정시스템의 예산집행 실명관리카드를 확인한 결과 위의 현황과 같이 2013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2,979건을 예산집행 하면서 1,450건을 비실명으로 재정시스템에 등록하였고, 실제 사업발주자 및 승인권자와는 달리 면 총괄 회계담당자가 지출서류를 전달받아 지방재정시스템의 지출품의, 결의등록을 대행 등록하고 직상급자인 지출원이 승인 처리하여 사업부서(팀)와의 전산처리 과정에서 상호 확인 없이 지출하는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예산집행 실명제 이행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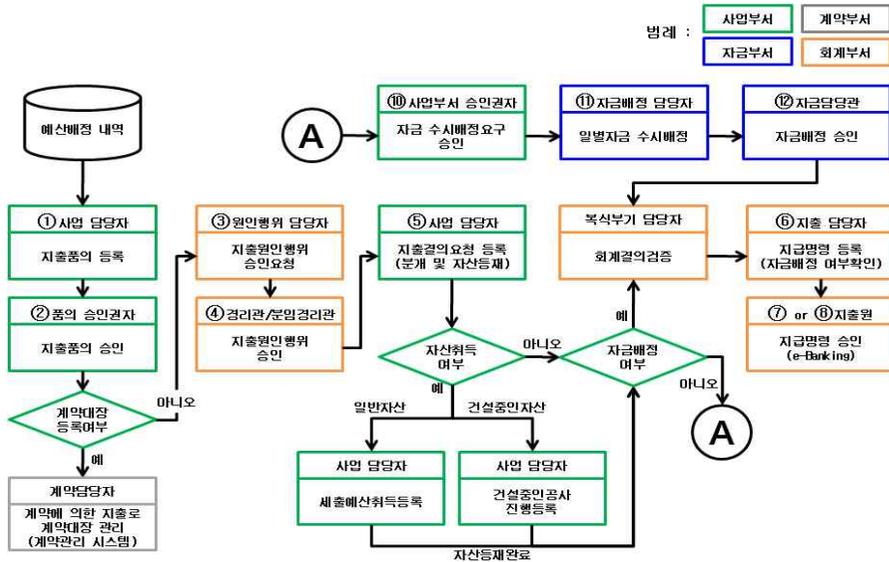
【처분요구】

영인면장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예산집행(일반지출) 업무처리 흐름도



【제 목】 건설공사 준공검사 처리 부적정

【부 서 명】 영인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준공검사 미입회 현황

사업명	도급업체 (대표자)	사업비(천원)			준 공 검 사 일	비고
		계	도급	관급		
신봉4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건설산업 (주) (윤○○)	31,439	12,806	18,633	2014. 05.08.	

나. 위법·부당내용

○ 아산시 건설공사감독관 복무 규정(훈령 제91호) 제25조[별표1] (아산시 건설공사계약 특수조건), 시장지시사항(2008-270, 2008.06.23.), 감사담당관 -20(2009.01.05.)호에 따라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서 공사금액(관급 자체비 포함) 3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상, 2014.7.7.기준) 공사를 추진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부서에 입회 요청하여 준공검사를 확인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영인면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건설산업(주)(대표 윤○○)와 도급계약 체결한 “신봉4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건에 대하여 감사부서의 입회 요청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처분요구】

영인면장은

- 「아산시 건설공사감독관 복무 규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공사 준공검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수의계약 내역 공개 소홀

【부 서 명】 영인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수의계약 미공개 현황 : 붙임 참조

나.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2014. 2. 5. 개정 전에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401호, 2016.1.20.)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6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2014. 2. 5. 개정 전에는 1년 이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럼에도 영인면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수의계약 체결한 “영인면 사무소 IPT(IP전화) 시스템 설치공사” 등 16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내역을 아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처분요구】

영인면장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의계약 미공개 현황

연번	공사명	도급업체	계약일	도급공사비 (천원)
1	영인면사무소 IPT(IP전화) 시스템 설치공사	◇◇정보통신(주)	2013.02.07.	17,570
2	상성리 배수로 정비공사	◎◎건설(주)	2013.11.13.	11,252
3	성내2리 전석쌓기 공사	□□건설(주)	2013.10.29.	18,345
4	창용4리 진입로 석축공사	△△건설(주)	2013.11.21.	20,826
5	백석포1리 마을안길 보수공사	▽▽종합공사	2014.03.14.	493
6	영인면 백석포리 게이트장 지붕판넬 설치공사	◇◇건설산업	2014.03.10.	3,949
7	상성리 양수장 보수공사	◎◎공업사	2014.04.23.	2,130
8	영인면 주민자치센터 인근 건물 진입 전기공사	㈜▽▽전기	2014.04.25.	3,630
9	상성리 양수장 용수관 보수공사	□□공업사	2014.06.30.	1,550
10	아산2리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수리공사	◇◇상사	2014.07.15.	1,188
11	신봉4리 농업용 관정 제어판넬 설치공사	㈜◎◎엔지니어링	2014.08.06.	880
12	면사무소 상수도관 누수 보강공사	□□개발(주)	2014.09.19.	1,480
13	영인면 관내 보수공사	▽▽건설(주)	2014.12.18.	4,100
14	주민센터 창호공사	◇◇공사	2014.12.24.	2,903
15	면청사 비가림공사	◎◎샷시공사	2015.11.23.	2,350

【제 목】 건축물 대장 말소 관련

【부 서 명】 영인면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철거건축물 현황

소 재 지	연면적	주구조	소유자	철거사유
영인면 아산리 461-3 외 1필지(461-8)	79.34㎡	시멘트 벽돌조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조성

나. 위법·부당내용

- 영인면 주민자치센터 주차장부지 조성에 따른 상기 건축물을 철거 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건축물의 철거·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에 따라 건축물대장 말소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러함에도 영인면에서는 2014. 4. 23. 영인면 주민자치센터 주차장부지 조성에 따른 건축물 철거공사 준공계가 (주)◇◇◇◇로부터 제출되어 완료되었으나,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영인면장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건설공사 하자검사 관련업무 소홀

【부 서 명】 영인면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하자검사 실시 현황

정기검사 미실시	최종검사 미실시	비 고
6건	2건	성내2지구 농로포장공사(2015년 사업 완료) - 배수로 이음부 하자 발생

○ 하자검사 세부현황

연번	사 업 명	준공일	도급자 (대표)	하자보증 기 간	하자검사 실시여부		
					정기	최종	관리부
계					6건	2건	6건
1	지방하천(신언천) 준설공사	2014.04.18	(주)◇◇	2014.04.22. ~ 2017.04.21.	미실시	해당 없음	미작성
2	영인면 소하천 준설공사	2014.04.23	(주)□□ 종합개발	2014.04.28. ~ 2016.04.27.	미실시	미실시	미작성
3	지방하천(신언, 아산, 신현천) 준설공사	2014.05.02	(주)□□ 종합개발	2014.05.08. ~ 2016.05.08.	미실시	미실시	미작성
4	영인면 용배수로 준설공사	2015.04.08	△△△△ 건설(주)	2015.04.09. ~ 2017.04.08.	미실시	해당 없음	미작성
5	영인면 소하천(도수, 안골, 상성천) 준설공사	2015.04.22	(주)□□ 종합개발	2015.04.22. ~ 2018.04.21.	미실시	해당 없음	미작성
6	영인면 지방하천(아산, 주, 신현, 신언천) 준설공사	2015.04.22	(주)□□ 종합개발	2015.04.22. ~ 2018.04.21.	미실시	해당 없음	미작성
7	성내2지구 농로포장공사	2015.04.22	주식회사 ◎◎이앤씨	2015.04.28. ~ 2018.04.27.	실시	해당 없음	작성

나.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고, 하자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고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 그러함에도, 영인면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2014년~2015년에 사업 완료된 건설공사 6건에 대하여 정기검사(연 2회 이상)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4년에 사업 완료된 건설공사 2건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하자검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사업완료 된 성내2지구 농로포장공사 건은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감사기간 중 현장 확인 결과 배수로 이음부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영인면장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하자발생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산감기동대원 채용업무 소홀

【부 서 명】 영인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산감기동대원 채용 현황

(단위 : 명)

구 분 년도	공고기간	모집예 정인원	응시 인원	채용 인원	비고
2013	미공고	9	9	9	- 모집공고 미이행 - 근로계약서 상 직인누락 - 근로계약서상 계약일 미기재 -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누락
2014	01.13. ~ 01.20.	9	9	9	- 근로계약서 상 직인누락 - 근로계약서상 계약일 미기재 -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누락
2015	01.15 ~ 01.19	10	11	10	-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누락
2016	01.08 ~ 01.15	9	9	9	-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누락

나. 위법·부당내용

- 산감기동대원 채용을 위하여 산감기동대 모집공고 후 해당 공고문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에 합격하여 선발된 자에게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산감기동대원으로서의 임무 수행 능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를 판단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채용이 결정된 산감기동대원과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영인면장)와 근로자(산감기동대원) 간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기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

용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 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그러함에도, 영인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3년 상반기 산감기동대 채용업무를 수행하면서 모집공고를 미이행하였고, 모든 산감채용에서도 채용신체검사서를 징구 및 확인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 상 계약일 및 직인이 누락하는 등 산림감시기동대 채용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영인면장은

-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감기동대원 채용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국토공원화 인부사역업무 소홀

【부 서 명】 영인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국토공원화 인부사역 현황

(단위 : 원)

년도	사역단가		적용보험율		법적보험율		최저임금	비고
	현황	법적	고용	산재	고용	산재		
2013	40,000	38,880	미적용	미적용	1.95	2.7	4,860	8시간
2014	40,000	41,680			2.15	2.7	5,210	"
2015	45,000	44,640			2.15	2.7	5,580	"
2016	49,000	48,240			2.15	2.7	6,030	"

나. 위법·부당내용

○ 국토공원화 인부사역 결의 후 인건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임의의 기준이 아닌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에 의거 시간당 최저임금을 보장토록 하고 있으며, 고용 및 산재보험을 또한 해마다의 고시요율을 적용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 그러함에도, 영인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4년도 국토공원화 인부사역 결의시 인부임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40,000원을 책정하였으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법적으로 가

입을 권고하고 있는 고용 및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인부사역결의를 하는 등 국토공원화 인부사역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영인면장은

- 「최저임금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공원화 인부사역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폐기물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업무 관련

【부 서 명】 영인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입금지연 현황

(단위 : 원)

년 도	지 연 횟 수			지 연 일
	소계	스티커	마대	
합 계	86	74	12	
2013	11	8	3	2일 ~ 7일
2014	20	13	7	2일 ~ 7일
2015	37	37	파악불가	2일 ~ 7일, 10개월21일 8개월18일
2016	18	16	2	2일(2), 5일(16)

나. 위법·부당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따라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수수료 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아산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에 따라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였으며, 위임사무를 철저히 하도록 영인면에 통보(관련문서: 자원

순환과-2104(2012. 11. 21.)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무를 위임받은 영인면에서는 대형폐기물수수료 부과징수에 관련하여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이하 “폐기물스티커”), 불연성마대, 등의 수불사항을 철저히 기록관리하고, 판매대금 징수결의 및 납부조치를 철저히 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6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영인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5년도에는 불연성마대의 판매일과 수납일을 병기표기하지 않아 세입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불연성마대 판매대금의 경우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대형폐기물 및 불연성마대 수납금의 납입기한을 지연(2일~7일)하였으며, 2015년에 수납누락(2건)이 발생하여 2016년에 세입처리하는 등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영인면장은

-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수방자재공구 관리 소홀

【부 서 명】 영인면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연번	자재·공구명	수량	대장관리	보관장소	비 고
1	포대류	4,200	미관리	일반창고	
2	류음줄	85	미관리	일반창고	
3	말목	236	미관리	일반창고	
4	pp필름	17	미관리	일반창고	
5	보온덮개	15	미관리	일반창고	
6	동력양수기	3	미관리	일반창고	
7	함마	2	미관리	일반창고	
8	도끼	3	미관리	일반창고	
9	동력톱	2	미관리	일반창고	
10	영화칼슘	31	미관리	일반창고	
11	막삽	27	미관리	일반창고	

나. 위법·부당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아산 시 수방자재 및 민방위·소방장비의 상호 지원협력을 위한 운영 규정」에 따르면 재난응급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여야 하며 수방 장비·자재를 기능 및 목적에 합당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및 수

방 장비·자재의 망실, 훼손 등으로 인하여 가치의 하락과 성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 보관창고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성능저하 및 기능상실로 인하여 수방자재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수방자재를 수리 및 보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영인면에서는

2014년6월7일 이후 수방자재 수불현황을 관리하지 않았으며, 훼손과 부족한 수방자재의 경우 관련실과에 요청하여 비치하여야 함에도 감사시점까지 수방자재 관리업무를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영인면장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방자재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수불대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민방위 자재관리 소홀

【부 서 명】 영인면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자재·공구명	대장상	실수량	대장관리	보관장소	비 고
메가폰	4	3	미관리	일반창고	
지휘용엠프	5	0	미관리	일반창고	
응급처치세트	2	0	미관리	일반창고	
개인방호	4	0	미관리	일반창고	
구명환	1	6	미관리	일반창고	
구명조끼	1	8	미관리	일반창고	
로프	2	9	미관리	일반창고	
농건용공구	1	0	미관리	일반창고	
방독우의	22	0	미관리	일반창고	
방독장갑	22	0	미관리	일반창고	
방독장화	20	0	미관리	일반창고	
오염표지판	8	0	미관리	일반창고	
탐지키트	6	0	미관리	일반창고	
피부제독키트	3	0	미관리	일반창고	
일반방독면	60	501	미관리	일반창고	
국민방독면	0	20	미관리	일반창고	
한국형방독면	0	10	미관리	일반창고	

나. 위법·부당내용

-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민방위관련 물자,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비축, 설치,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장비·물자)에 의거 민방위 준비를 위한 필요물자를 갖추어야 하며 시행규칙에 명기된 물자 등을 구비하고, 미 구비 및 노후된 물자(방독면 등)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에 의거 비용을 지원받아 민방위 준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그러함에도 영인면에서는 민방위장비관리대장을 10년 이상 미관리하였으며, 민방위자재의 현황 및 작동여부를 파악하여 사용불가 및 고장난 민방위자재를 교체 및 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시점까지 관리하지 않았으며, 특히 방독면의 경우 사용기한이 모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 및 폐기처분하지 않는 등 시설·장비·물자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영인면장은

- 『민방위기본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방위 자재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자재 및 공구 물품을 현행화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 업무처리 소홀

【부 서 명】 영인면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연도별	계	위법 부당사항(유형)					비고
		수수료 미징수	민원서류 미 표시	농지취득자 서명(도장)누락	신청서 미실시	위임장 서류미흡	
계	84	1	71	3	5	4	
2013	12		12				
2014	37	1	32	1	2	1	
2015	35		27	2	3	3	

나. 위법·부당내용

- 영인면에서는 2013.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업무를 처리하였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동법 시행령 제8조(민원사항의 접수), 동법 시행규칙 제6조(민원서류의 표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 동 시행규칙 제17조(공람할 문서)에 따르면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서류의 왼쪽 윗부분에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야하고, 처리담당자는 문서를 접수하여 민원서류인 경우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및 제74조(수수료)의 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시에는 1,000원의 수수료를 증지로 받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영인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수수료 미징수 1건 1,000원, 민원서류 표시인 누락 84건, 신청인 도장 및 서명 누락과 결재(공람)권자의 미결재(선람)처리 5건,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의거 위임장작성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하나 미흡한 위임장으로 민원처리 3건등 민원서류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처분요구】

영인면장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특수시책

□ 영인면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 추진개요

- 기간 : 2014. 7월 25일 ~ 8월 8일
2015. 7월 24일 ~ 8월 7일
- 장소 : 영인산휴양림 관리사무소 앞
- 추진내용 : 하계휴가철을 이용하여 영인산휴양림을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역 내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판매

○ 추진상황

- 2009년 영인면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 주관으로 첫 실시
- 2015년 관내 8개 생산자단체 참여, 약 30여종의 장터 판매 운영

○ 기대효과

- 저렴하고 신선한 제철 농산물 판매로 수요공급자간 직거래 확대 기여
- 지역 농·특산물 등 홍보 효과
-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작성자 : 영인면 산업팀장(행정전화 : 3204) 농업6급 박오봉

V. 수범사례

□ 민·관 협력을 통한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지원

○ 추진개요

- 추진시기 : 연중
- 사업대상 : 관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층 가정
- 참여단체 :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 아산비전, 좋은이웃, 에이제이(주), 삼성디스플레이, 해비타트 등

○ 추진사례

- 독거노인 연탄지원 사업(2015.12.22.)
⇒ 연탄 2,000장 저소득 6가구 전달
- 독거노인 땀감지원 사업(2015.12.29.)
⇒ 땀감 6톤 저소득 2가구 전달
- 저소득 가정 집수리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2016.4.14.)
⇒ 화장실, 주방설치, 단열, 도배, 장판 시공 등 환경정비
- 사랑의 집 짓기 운동(2015.10.12. ~ 10.21.)
⇒ 벽지장판 및 창틀 교체 등을 통한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 사랑의 쌀 나누기(2015.11.1. ~ 11.13.)
⇒ 쌀 660kg(160여만원 상당) 저소득 66가구 전달

○ 기대효과

- 민·관이 함께 하는 건전한 복지문화 확산
-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복지만족도 증진
- 복지사업 지원 범위 확대 및 사각지대 축소 도모

작성자 : 영인면 복지팀장(행정전화 : 3662) 세무6급 박수환

□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종합상담창구」 운영

○ 추진개요

- 일 시 : 2015. 9. 17.(목) 14:00 ~ 16:00
- 장 소 : 영인면사무소 2층 회의실
- 대 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100여명
- 참여단체 : 8개단체

○ 추진내용

분 야	참여기관 및단체	내 용	비 고
복지상담	사회복지과 (행복키움지원단)	각종 복지제도 및 시책홍보, 상담	
자활(일자리)상담	사회복지과 (자립지원직업상담사)	자활자립을 위한 일자리 상담	
무료법률상담	법률홈닥터 (법무부 지원)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사,형사,가사사건 등	
신용회복상담	천안신용회복위원회	금융기관 채무 연체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	
의료(건강)상담	참요양병원 시민병원	기초건강검사,내과상담 정신과 치매검사 등	
구강검진	수치과	구강검진 및 치아관리법 지도	
물품나눔	아산기초푸드뱅크	기부물(식)품 지원	
재능기부	자원봉사센터	이미용서비스, 손발 마사지, 네일아트 등	

○ 기대효과

-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 유관 기관·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 기부물(식)품 및 재능기부 나눔을 통하여 나눔문화 확산 및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작성자 : 영인면 복지팀장(행정전화 : 3662) 세무6급 박수환